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

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22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6. 6. 17.

발의자 : 이인영 · 김경진 · 한정애

문미옥 · 우원식 · 황희

인재근 · 임종성 · 박남춘

윤후덕 · 김민기 · 설훈

김정우 · 송영길 · 진선미

민홍철 · 심재권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소년의 근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근로권 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,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 작성,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·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

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
임(안 제52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1호 신설).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

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2조의2(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,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 따른 교직원,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

3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

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
4.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

그 종사자
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

그 종사자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
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
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4조의2(벌칙)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
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
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에 처한다.

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
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
고한 사람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<p>제52조의2(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 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,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</p> |

소년상담복지개발원, 같은 법
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
지센터, 같은 법 제30조에 따
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
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
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
종사자
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에
따른 교직원, 같은 법 제19조
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
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
겸임교사 등

3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
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
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
과 그 종사자

4. 「아동복지법」 제50조에 따
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
종사자
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
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
터의 장과 그 종사자
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
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
설의 장과 그 종사자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

다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
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
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
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
아니 된다.

<신 설>

제64조의2(별 칙) 제52조의2제3항
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
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
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
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
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
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6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부과한다.

<신 설>

1. · 2. (생 략)

② · ③ (생 략)

제66조(과태료) ① -----

-----.

1. 제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
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
짓으로 신고한 사람

2. · 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